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19. 6

## [ 목 차 ]

I. 추진배경 .....	1
II.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	1
1. 적용 대상 .....	1
2.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	1
3.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	6
4. 과태료 .....	6
5. 시행일 .....	6
III. 관련 규정 .....	7
IV. FAQ (자주묻는 질의답변) .....	10

## I 추진 배경

-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
    -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9.6.13. 시행)

## II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 1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받는 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 < 참고 >

- ◆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동 법 제32조의3의 적용대상이 됨
  - 이 때,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법인)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
- ◆ (수탁자)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32조의3이 준용되지 않아(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 법 제32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수탁자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2조의3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매출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함
  -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함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 다만,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 수입금액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

## 3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이용자수 일일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92(일)

### < 참고 >

- ◆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시 이용자수)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의 ‘이용자수’ 산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 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
- ◆ (탈퇴회원·휴면회원)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 또는 서비스 미이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이용자수’에 포함
- ◆ (회원·비회원) ‘이용자수’와 ‘회원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됨
- ◆ (임직원) 임직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수’ 산정 시 임직원 수는 제외됨

## 4 면제 대상

-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양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및 배상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함
-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함

## 2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규모 구간 별로 차등 설정 : 최저 5천만원 ~ 최고 10억원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별표 1의2)

### 1 보험 최저가입금액 (준비금 최소적립금액)

- 적용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 별표 1의2
-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함

< 별표 1의2 :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 ◆ 보험가입금액 : 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시 약정한 금액
- ◆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
- ◆ 이용자수 :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이용자수 평균
-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2 준비금 적립 방법

-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 준비금 : 회사가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잉여금) 중 일부를 장래 생길 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
- ◆ 임의적립금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한 것으로, 그 이용 목적과 방법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3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내용을 포함·충족)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 4 과태료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천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  
(시행령 별표9 제2호처목)

## 5 시행일

-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보험 가입 등)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다만,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할 예정

### III 관련 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전문개정 2008. 6. 13.]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시행일 : 2019.6.13.] 제32조의3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②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가입 대상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의2]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제18조의2제2항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이용자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비 고

1. “이용자수”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말한다.
2. “매출액”이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저. 법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4호의2	2,000	2,000	2,000

**IV FAQ (자주묻는 질의답변)**

**1 적용 대상**

**Q1-1. 위탁사(A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B)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개인정보는 수탁사에 DB에 저장되고 위탁사는 접근 권한 등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규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 귀사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A사)로부터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B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의3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A사)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수탁사(B)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2.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 학교 등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대상인지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①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수신)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 해당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영리 목적' 여부는 법인의 종류(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와 관계없이 이익 발생 활동 여부로 판단하며, 비영리법인이라도 부수·보조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영리 활동을 영위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학교 및 병원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동 법 제3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대상이 됩니다.

**Q1-3. 당사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로 대부분의 주된 사업(서비스)는 글로벌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본사와 한국 지사 모두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 소재 본사인지, 국내 소재 지사인지를 고려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본사와 지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각각 보험 가입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 2 이용자수

**Q2-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나 페이지뷰(PV:page view)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저장한 이용자의 수(개인정보 보유량)입니다.
-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Q2-2. 당사는 오프라인 사업(매장)과 온라인 서비스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 사업은 별개의 서비스로 각각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수’ 산정 시에는 ‘온라인 사업의 이용자수’만 포함해도 되는지요?**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됩니다.

**Q2-3. ‘이용자수’는 회원수라고 보면 되는지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휴면회원, 탈퇴회원도 ‘이용자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 ‘이용자수’와 ‘회원 수’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됩니다.
- 탈퇴회원 및 휴면회원의 정보를 DB에 분리·보관하고 있는 경우,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Q2-4. 당사는 B2B 서비스를 하면서 거래 상대 기업의 담당자 개인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수’에 포함되는지요?**

- 원칙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등)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임원진·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만일 B2B 서비스를 하는 거래 상대 기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이러한 경우 B2B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 상대 기업의 담당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귀사에서 제공하는 B2B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만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귀사와 이용자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용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Q2-5. 당사는 이벤트 목적으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간헐적으로 보관·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용자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 이벤트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이벤트가 종료되고 경품 발송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하므로,
  - 이벤트성 목적으로 수집하였더라도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파기하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Q2-6. 당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용자수’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Q2-7. 당사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한사람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거래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데 이 경우 이용자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 동일인은 중복을 제외하여 이용자수를 산정하시면 되고,
  -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추정하시어 구분하면 되지만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Q2-8. ‘이용자수’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인데, 이용자수 기준은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만일, 직전년도 3개월(10월, 11월, 12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산정(이용)이 가능하다면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 직전년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산정(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9. 당사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로 대부분의 주된 사업(서비스)는 글로벌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사와 한국지사 간 이용자수나 매출액은 각각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 소재 본사인지, 국내 소재 지사인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국내 이용자에게 본사와 지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본사와 지사는 각각 이용자수와 매출액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2-10. ‘임직원수’도 ‘이용자수’에 포함되는지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용자수 산정 시 임직원수는 제외됩니다.

### 3 매출액

**Q3-1. ‘매출액’의 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온라인) 매출액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출을 모두 합산한 매출인가요?**

- 매출액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아니라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 기준)

### 4 준비금

**Q4-1. 준비금을 적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준비금은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Q4-2. 준비금 적립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내년 3월 이후 가능한데, 한시적으로 '준비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는지요?**

○ 총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주주총회 개최 이후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Q4-3. 준비금을 적립(또는 보험가입)한 사실은 향후 어떻게 증빙하면 되는지요? 신고 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이행 점검 시에는 보험증권·회계장부·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험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

**Q5-1. 현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또는 '사이버종합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요?**

○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특별약관을 포함)의 '보상하는 손해'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상)하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보장범위에 미치지(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가입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기존 보험상품 해지 후 요건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2. 다른 계열사와 함께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원칙적으로 준수 의무는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주체인 개별 법인(또는 자연인) 단위로 발생합니다.  
- 이에, 단체보험을 통한 가입 형태도 무방하나 법령 상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준은 개별 기업별로 적용되므로 단체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개별 기업별 준수해야하는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법령 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5-3. 당사는 금년에 설립·창업하여 직전년도 매출액이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요건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도에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며, 법령 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Q5-4. 손해배상보험 등 가입 의무 대상인 기업으로, 당사가 보험의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 가입도 무방한지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되고,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피보험자가 되는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무방한지요?**

- 보험업법(제3조)에 따라 외국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선박, 항공 등 일부 보험상품, 국내에 취급되지 않는 보험종목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소재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 3개 이상의 국내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등은 손해보험협회 확인 등을 거쳐 외국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상품이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6.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보험 등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 폐업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 등 의무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 휴업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였다면 보험 가입 등 의무 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향후 영업 운영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1천명)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5천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험 가입 등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Q5-7. 자회사도 손해배상책임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회사가 대비한 경우에는 제외되나요?**

- 의무 적용 대상은 '법인' 단위로 자회사와 모회사가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Q5-8. 준비금 적립과 보험 중 택 1을 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준비하는 방향도 가능할까요?**

- 준비금 적립과 보험 가입 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등과의 관계**

**Q6-1.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알고 싶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했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손해배상의 보장)에서 정한 의무를 충족할 때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기준 또는 최소적립금액기준은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Q6-2. 당사는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및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도 법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보상)하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장범위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이 필요합니다.